

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정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,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,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,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사·공단의 경영평가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 분야에서 서울연구원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 재정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대상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, 서울연구원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
- 2) 관련법령 및 조례
 - 지방공기업평가원 : 지방공기업법 제 7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
 - 서울연구원 :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,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
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
 -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

나. 출연의 필요성

대 상 기 관	출연의 필요성
지방공기업평가원	-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의 출연을 통하여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고 전문적·효율적인 지방공사·공단 정책연구 및 경영평가 실시
서울연구원	-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으로,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·체계적 조사·분석 및 정책 연구·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
한국지방행정연구원	-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,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(법정 출연금)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	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야 함(법정 출연금) -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 제고

다. 주요 사업

대 상 기 관	주요 사업
지방공기업평가원	-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- 지방공기업(광역+기초)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
서울연구원	- 서울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·연구 - 서울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 -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구 및 정보 교류·협력
한국지방행정연구원	-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·지방재정·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	-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-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 성 자 : 공기업담당관 출자출연팀 강수영 (☎ 2133-6783)